

제 호

작업중지 명령서

사업장명:

사업장 소재지:

전화번호: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11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.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바라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작업중지 사유	
중지 대상 작업의 종류	
개선조치 내용	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